

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

신청인	법인명(상호)		대표자	
	주소	(전화번호)		
특수관계자	법인명(상호)		대표자	
	신청인과의 관계			
	국가 및 주소			
조정내용	정상가격 산출방법			
	수입 예정 시기		통관 예정 세관	
	거래가격 조정방법	※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		

「관세법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첨 부 서 류

-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
가.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,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
나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
-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
-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
-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

거래가격 조정방법

※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,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상 수입물품 내역

※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

2. 거래당사자(지급자, 영수자)

※ 지급/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

3. 수입물품별 거래(잠정)가격 산출방법

※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

4. 거래가격 조정 방법 (예시)

※ (미실행)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%이상 ~ 5%이하

(외환송금) 5% 초과시 : 영업이익 5%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

(외환영수) 3% 미만시 : 영업이익 3%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

5. 거래가격 조정 시기(분기, 반기, 연말 등)

6.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

※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